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713
----------	------

2025년 6월 19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5월 23일, 정준호 의원
나. 회부일자 : 2025년 5월 29일
다. 상정일자 : 제331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25년 6월 19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정준호 의원]

가. 제안이유

-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질병을 조기에 관리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반려동물 보호와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1) 취약계층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돌봄에 필요한 시책 수립, 경비 지원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5조의2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비대상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취약계층 반려동물 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질병을 조기에 관리할 수 있게 하고 양육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동물 보호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나. 검토의견

- 동 조례 제25조¹⁾는 시장 또는 구청장이 유기동물의 구조·보호, 입양,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 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동물보호센터, 자치구 등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2021년 개정(제25조제3항 신설)을 통해 취약계층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음.
- 서울시는 2022년부터 ‘우리동네 동물병원 운영사업’²⁾을 통해 취약계층의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고 ‘우리동네 펫위탁소 운영사업’³⁾으로 취약계층의 동물

1) 제25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유기동물의 구조·보호와 입양, 동물학대 방지, 동물 등록, 반려동물의 교육·홍보 등 동물보호·복지 시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자치구 또는 소속 기관과 동물보호센터, 동물복지지원센터 및 영업자, 영 제6조에 따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구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내 동물의 구조와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원활한 수행을 위해 영 제6조에 따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 또는 구청장은 취약계층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위해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 또는 구청장은 시민의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의 예방 및 완화 지원을 위하여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 또는 구청장은 봉사동물로서 은퇴한 동물의 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을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 추진('22년도~'24년도)

- 사업예산 : ('24) 5억원, ('23) 3억원, ('22) 3억원
- 지정병원 : ('24) 113개소, ('23) 92개소, ('22) 68개소
- 지원실적 : ('24) 2,539마리 ('23) 1,864마리, ('22) 1,388마리

3) 우리동네 펫위탁소 운영 사업('22년도~'24년도)

- 사업예산 : ('24) 4천6백만원, ('23) 1억 2천만원, ('22) 6천7백만원
- 지정펫위탁소 : ('24) 18개소, ('23) 26개소, ('22) 9개소
- 지원실적 : ('24) 134마리 ('23) 215마리, ('22) 54마리

위탁 보호비를 지원하고 있음.

- 안 제25조의2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취약계층 반려동물 지원 정책에 선명성을 더하고 있어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세부적으로 지원 명칭을 법령에 규정된 ‘돌봄’⁴⁾으로 명명(제1항)하고 지원 대상에 ‘진료비’, ‘위탁보호비’ 등을 명시(제2항)하였으며,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거나 협약을 체결한 동물병원 등의 기관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경비 지원 범위를 구체화(제3항)하고 있음.

또한, 경비를 지원받는 취약계층 대상자는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동물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해당 반려동물의 소유자인 경우에만 지원(제4항)하도록 하였으며,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긴급복지 지원대상자를 우선 지원(제5항)하고 적극 홍보(제6항)하도록 하는 등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도 이견 없음.

4) 「아이돌봄 지원법」,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6.3.26.),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6.3.27.)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취약계층 반려동물 돌봄 지원) ① 시장은 취약계층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적절한 보호와 치료 등 돌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진료비
2. 반려동물 위탁보호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경비는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거나 협약을 체결한 동물병원 등의 기관에만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고, 동물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해당 반려동물의 소유자등이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

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⑥ 시장은 반려동물 돌봄 지원 사업과 제도에 대해 시민이 충분히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등) ①·② (생 략) ③ <u>시장 또는 구청장은 취약계층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위해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u> ④·⑤ (생 략) <u>〈신 설〉</u>	제25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등) ①·② (현행과 같음) <u>〈삭 제〉</u> ③·④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u>제25조의2(취약계층 반려동물 돌봄 지원)</u> ① <u>시장은 취약계층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적절한 보호와 치료 등 돌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② <u>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u> <u>1. 반려동물 진료비</u> <u>2. 반려동물 위탁보호비</u> <u>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③ <u>제2항에 따른 경비는 시장 또</u>

는 구청장이 지정하거나 협약을 체결한 동물병원 등의 기관에만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고, 동물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해당 반려동물의 소유자등이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⑥ 시장은 반려동물 돌봄 지원 사업과 제도에 대해 시민이 충분히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5조의2(취약계층 반려동물 돌봄 지원)를 신설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관련부서(정원도시국 동물보호과)에서 예산을 기편성하여 추진 중 이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참고] 2025년도 동물보호 관련 분야별 예산 내역

조항	사업명	예산액(천원)
제25조의2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지원(불임1)	647,400

※자료: 2025 서울시 예산서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주병준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 계 분 석 관 김지혜
☎ 02-2180-7952
e-mail : kjh0123@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

[붙임 1] 2025년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지원 사업설명서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5. 1.~12. (연례반복)
- 사업대상 :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회적 약자
- 주요내용
 -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지정하여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에게 필수 의료(기초검진, 예방접종 등) 및 선택(기초검진 중 발견된 질병치료 또는 중성화 수술) 동물의료 지원
 - 우리동네 펫위탁소를 지정하여 병원 입원, 명절, 휴가철 등 사회적 약자의 장기 외출 시 반려동물 위탁서비스를 지원
 - 경제적 부담으로 동물장례를 이용 못하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기본장례서비스 지원
 -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동물매개치료 시범사업 추진
- 소요예산 : 647,400천원